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,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(안 제10조제3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유독물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, 수입신고와 수입허가에 관한 이행 의무를 개선하여 화학물질 수입관리제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, 유독물질 수입신고·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받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수입제도 합리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환경부 제16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과제('21.12)로 '21년 12월부터 기시행 중인 제도임

라. 입법효과

- 화학물질 수입관리제도를 합리화하여 산업계의 제도 이행의 행정적 부담 경감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

2.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(안 제20조의2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대통령령의 인용조문의 현행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인용조문을 현행화

*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령 규정을 명확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행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